위파크 제주 1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 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를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Ж

단지 주요 정보

주택 유형		해당 지역	기타 지역		규제 지역 여부				
민영		자치도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08.30. 이전부터 계속 거주)	제주특별자치도 1년 미만 계	속 거주자	비규제 지역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	<u>0</u>	없음	없음	미절	역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8.30.(금)	2024.09.09.(월)	2024.09.10.(화)	2024.09.20.(금)	2024.09.22.(일)~ 09.26.(목)	2024.10.01.(화)~ 10.04.(금)

I 공통 유의 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 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 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 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 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 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자격	일반공급							
ଅଟ ମସ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 항목 등 청약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 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 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 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 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 입주자 지위 무효)로 되오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청약 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 신청자
-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 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2018.12.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여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epark-jeju.co.kr)에 공개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 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 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 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 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 지역 거주자로는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 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 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 금액 변경 없이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 예치 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유의 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 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 신청 유형별 사용할 수 있는 인 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약 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0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			

단지 유의 사항

П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8.3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 우선 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8.30. 이전 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정 2024.09.09.(월) 2024.09.10.(화)		2024.09.20.(금)	2024.09.22.(일)~ 09.26.(목)	2024.10.01.(화)~ 10.04.(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		■ (PC·모바일) 청약홈	■ 위파크 제주 견본주택 (주소: 제주시 오라이동 1585-	-1번지)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 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 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 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할 때, 기타 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 없음

교 | 공급 대상 및 공급 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주택과 - 51433호(2024.08.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854-1번지 일원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7~15층 15개 동 총 686세대 중 일반분양 617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 입주 시기: 2027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 대상

(단위:m², 세대)

				2	주택 공급면적(m	²)	기타					최하층	
주택 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주택형 약식 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우선 배정 세대수	
	01	084.8567A	84A	84.8567	25.2633	110.1200	67.7210	177.8410	55.3482	156	156	13	
	02	084.7784B	84B	84.7784	25.7272	110.5056	67.6585	178.1641	55.2971	143	143	12	
	03	108.7699A	108A	108.7699	31.4439	140.2138	86.8054	227.0192	70.9457	198	198	16	
2024000382	04	108.7699B	108B	108.7699	31.4439	140.2138	86.8054	227.0192	70.9457	67	67	6	
2024000502	05	129.6199	129	129.6199	37.5465	167.1664	103.4451	270.6115	84.5452	51	51	5	
	06	183.8515P	183P	183.8515	55.4072	239.2587	146.7259	385.9846	119.9181	1	1	-	
	07	197.7192P	197P	197.7192	59.0653	256.7845	157.7866	414.5711	128.9634	1	1	-	
					합 계					617	617	52	

-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주거 공용면적은 벽체 공용면적과 계단 공용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실, 방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지하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세대, 원)

				해당		공급	금액		계약	금(5%)				중도금(65%)				잔금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 라인	층	애당 세대 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차	2차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7회 (5%)	(30%)
				Т	" ' '				계약시	2024-11-05	2025-03-20	2025-08-20	2026-01-20	2026-08-20	2027-01-20	2027-06-21	2027-09-20	입주지정일
			1	3	285,684,000	512,316,000	-	798,000,000	20,000,000	19,9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39,900,000	239,400,000
			2	8	292,486,000	524,514,000	-	817,000,000	20,000,000	20,85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40,850,000	245,100,000
		106동 3호 4호 107동 3호 4호	3	8	298,930,000	536,070,000	-	835,000,000	20,000,000	21,75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41,750,000	250,500,000
84A	156	110동 3호 4호 112동 4호	4	9	305,374,000	547,626,000	-	853,000,000	20,000,000	22,65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42,650,000	255,900,000
		114동 3호 115동 4호	5-6	17	311,818,000	559,182,000	-	871,000,000	20,000,000	23,550,000	87,100,000	87,100,000	87,100,000	87,100,000	87,100,000	87,100,000	43,550,000	261,300,000
			7-9	25	318,262,000	570,738,000	-	889,000,000	20,000,000	24,45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44,450,000	266,700,000
			10층이상	26	321,484,000	576,516,000	-	898,000,000	20,000,000	24,9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44,900,000	269,400,000

			1	2	278,166,000	498,834,000	-	777,000,000	20,000,000	18,85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38,850,000	233,100,000
			2	5	284,610,000	510,390,000	-	795,000,000	20,000,000	19,75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39,750,000	238,500,000
		1025 25 45	3	4	291,054,000	521,946,000	-	813,000,000	20,000,000	20,65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40,650,000	243,900,000
		103동 3호 4호 105동 3호 4호	4	4	297,498,000	533,502,000	-	831,000,000	20,000,000	21,55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41,550,000	249,300,000
		114동 4호	5-6	9	303,226,000	543,774,000	-	847,000,000	20,000,000	22,35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42,350,000	254,100,000
			7-9	13	309,670,000	555,330,000	-	865,000,000	20,000,000	23,25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43,250,000	259,500,000
			10층이상	23	312,892,000	561,108,000	-	874,000,000	20,000,000	23,700,000	87,400,000	87,400,000	87,400,000	87,400,000	87,400,000	87,400,000	43,700,000	262,200,000
			1	1	286,400,000	513,600,000	-	800,000,000	20,000,000	2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40,000,000	240,000,000
			2	5	292,844,000	525,156,000	-	818,000,000	20,000,000	20,9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40,900,000	245,400,000
		101동 2호 103동 2호	3	5	299,288,000	536,712,000	-	836,000,000	20,000,000	21,8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41,800,000	250,800,000
		104동 2호 108동 2호	4	6	305,732,000	548,268,000	-	854,000,000	20,000,000	22,7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42,700,000	256,200,000
		109동 2호	5-6	10	312,176,000	559,824,000	-	872,000,000	20,000,000	23,6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43,600,000	261,600,000
		1118 42	7-9	16	318,620,000	571,380,000	-	890,000,000	20,000,000	24,5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44,500,000	267,000,000
			10층이상	31	321,484,000	576,516,000	-	898,000,000	20,000,000	24,9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44,900,000	269,400,000
84B	143		1	1	278,166,000	498,834,000	-	777,000,000	20,000,000	18,85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38,850,000	233,100,000
			2	5	284,610,000	510,390,000	-	795,000,000	20,000,000	19,75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39,750,000	238,500,000
		102동 2호 105동 2호	3	6	290,696,000	521,304,000	-	812,000,000	20,000,000	20,6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40,600,000	243,600,000
		106동 2호 107동 2호	4	4	297,140,000	532,860,000	-	830,000,000	20,000,000	21,5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41,500,000	249,000,000
		110동 1호 113동 2호	5-6	11	303,226,000	543,774,000	-	847,000,000	20,000,000	22,35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84,700,000	42,350,000	254,100,000
		1.50 ==	7-9	17	309,670,000	555,330,000	-	865,000,000	20,000,000	23,25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43,250,000	259,500,000
			10층이상	25	312,534,000	560,466,000	-	873,000,000	20,000,000	23,65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43,650,000	261,900,000
			1	4	350,496,000	628,640,000	62,864,000	1,042,000,000	20,000,000	32,1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52,100,000	312,600,000
			2	7	358,239,000	642,510,000	64,251,000	1,065,000,000	20,000,000	33,250,000	106,500,000	106,500,000	106,500,000	106,500,000	106,500,000	106,500,000	53,250,000	319,500,000
		101동 3호 103동 1호	3	6	365,971,000	656,390,000	65,639,000	1,088,000,000	20,000,000	34,4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54,400,000	326,400,000
		111동 1호 2호	4	6	374,043,000	670,870,000	67,087,000	1,112,000,000	20,000,000	35,600,000	111,200,000	111,200,000	111,200,000	111,200,000	111,200,000	111,200,000	55,600,000	333,600,000
		114동 2호 115동 1호 2호	5-6	12	381,775,000	684,750,000	68,475,000	1,135,000,000	20,000,000	36,750,000	113,500,000	113,500,000	113,500,000	113,500,000	113,500,000	113,500,000	56,750,000	340,500,000
108A	198		7-9	17	389,858,000	699,220,000	69,922,000	1,159,000,000	20,000,000	37,950,000	115,900,000	115,900,000	115,900,000	115,900,000	115,900,000	115,900,000	57,950,000	347,700,000
			10층이상	14	393,554,000	705,860,000	70,586,000	1,170,000,000	20,000,000	38,500,000	117,000,000	117,000,000	117,000,000	117,000,000	117,000,000	117,000,000	58,500,000	351,000,000
		102동 3호 104동 3호	1	7	340,406,000	610,540,000	61,054,000	1,012,000,000	20,000,000	30,600,000	101,200,000	101,200,000	101,200,000	101,200,000	101,200,000	101,200,000	50,600,000	303,600,000
		105동 1호	2	9	348,138,000	624,420,000	62,442,000	1,035,000,000	20,000,000	31,750,000	103,500,000	103,500,000	103,500,000	103,500,000	103,500,000	103,500,000	51,750,000	310,500,000
		106동 1호	3	10	355,881,000	638,290,000	63,829,000	1,058,000,000	20,000,000	32,900,000	105,800,000	105,800,000	105,800,000	105,800,000	105,800,000	105,800,000	52,900,000	317,400,000
		108동 3호 4호 109동 3호	4	10	363,613,000	652,170,000	65,217,000	1,081,000,000	20,000,000	34,050,000	108,100,000	108,100,000	108,100,000	108,100,000	108,100,000	108,100,000	54,050,000	324,300,000
	L	1			1						1	I.				l		

			5-6	20	371,016,000	665,440,000	66,544,000	1,103,000,000	20,000,000	35,150,000	110,300,000	110,300,000	110,300,000	110,300,000	110,300,000	110,300,000	55,150,000	330,900,000
		112동 1호 2호 113동 3호	7-9	30	378,748,000	679,320,000	67,932,000	1,126,000,000	20,000,000	36,300,000	112,600,000	112,600,000	112,600,000	112,600,000	112,600,000	112,600,000	56,300,000	337,800,000
			10층이상	46	382,455,000	685,950,000	68,595,000	1,137,000,000	20,000,000	36,850,000	113,700,000	113,700,000	113,700,000	113,700,000	113,700,000	113,700,000	56,850,000	341,100,000
			1	2	350,156,000	628,040,000	62,804,000	1,041,000,000	20,000,000	32,050,000	104,100,000	104,100,000	104,100,000	104,100,000	104,100,000	104,100,000	52,050,000	312,300,000
			2	2	358,239,000	642,510,000	64,251,000	1,065,000,000	20,000,000	33,250,000	106,500,000	106,500,000	106,500,000	106,500,000	106,500,000	106,500,000	53,250,000	319,500,000
		4445 25	3	3	366,311,000	656,990,000	65,699,000	1,089,000,000	20,000,000	34,450,000	108,900,000	108,900,000	108,900,000	108,900,000	108,900,000	108,900,000	54,450,000	326,700,000
		111동 3호 112동 3호	4	2	373,703,000	670,270,000	67,027,000	1,111,000,000	20,000,000	35,550,000	111,100,000	111,100,000	111,100,000	111,100,000	111,100,000	111,100,000	55,550,000	333,300,000
		115동 3호	5-6	5	381,775,000	684,750,000	68,475,000	1,135,000,000	20,000,000	36,750,000	113,500,000	113,500,000	113,500,000	113,500,000	113,500,000	113,500,000	56,750,000	340,500,000
			7-9	9	389,518,000	698,620,000	69,862,000	1,158,000,000	20,000,000	37,900,000	115,800,000	115,800,000	115,800,000	115,800,000	115,800,000	115,800,000	57,900,000	347,400,000
			10층이상	5	393,554,000	705,860,000	70,586,000	1,170,000,000	20,000,000	38,500,000	117,000,000	117,000,000	117,000,000	117,000,000	117,000,000	117,000,000	58,500,000	351,000,000
108B	67		1	2	340,406,000	610,540,000	61,054,000	1,012,000,000	20,000,000	30,600,000	101,200,000	101,200,000	101,200,000	101,200,000	101,200,000	101,200,000	50,600,000	303,600,000
			2	2	348,138,000	624,420,000	62,442,000	1,035,000,000	20,000,000	31,750,000	103,500,000	103,500,000	103,500,000	103,500,000	103,500,000	103,500,000	51,750,000	310,500,000
		101동 1호	3	3	355,881,000	638,290,000	63,829,000	1,058,000,000	20,000,000	32,900,000	105,800,000	105,800,000	105,800,000	105,800,000	105,800,000	105,800,000	52,900,000	317,400,000
		102동 1호	4	3	363,284,000	651,560,000	65,156,000	1,080,000,000	20,000,000	34,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108,000,000	54,000,000	324,000,000
		110동 2호	5-6	5	371,016,000	665,440,000	66,544,000	1,103,000,000	20,000,000	35,150,000	110,300,000	110,300,000	110,300,000	110,300,000	110,300,000	110,300,000	55,150,000	330,900,000
			7-9	8	378,748,000	679,320,000	67,932,000	1,126,000,000	20,000,000	36,300,000	112,600,000	112,600,000	112,600,000	112,600,000	112,600,000	112,600,000	56,300,000	337,800,000
			10층이상	16	382,455,000	685,950,000	68,595,000	1,137,000,000	20,000,000	36,850,000	113,700,000	113,700,000	113,700,000	113,700,000	113,700,000	113,700,000	56,850,000	341,100,000
			1	4	429,209,000	769,810,000	76,981,000	1,276,000,000	30,000,000	33,800,000	127,600,000	127,600,000	127,600,000	127,600,000	127,600,000	127,600,000	63,800,000	382,800,000
			2	4	438,959,000	787,310,000	78,731,000	1,305,000,000	30,000,000	35,250,000	130,500,000	130,500,000	130,500,000	130,500,000	130,500,000	130,500,000	65,250,000	391,500,000
		104동 1호	3	4	448,380,000	804,200,000	80,420,000	1,333,000,000	30,000,000	36,650,000	133,300,000	133,300,000	133,300,000	133,300,000	133,300,000	133,300,000	66,650,000	399,900,000
		108동 1호 109동 1호	4	4	458,141,000	821,690,000	82,169,000	1,362,000,000	30,000,000	38,100,000	136,200,000	136,200,000	136,200,000	136,200,000	136,200,000	136,200,000	68,100,000	408,600,000
		114동 1호	5-6	8	467,891,000	839,190,000	83,919,000	1,391,000,000	30,000,000	39,550,000	139,100,000	139,100,000	139,100,000	139,100,000	139,100,000	139,100,000	69,550,000	417,300,000
			7-9	9	477,312,000	856,080,000	85,608,000	1,419,000,000	30,000,000	40,950,000	141,900,000	141,900,000	141,900,000	141,900,000	141,900,000	141,900,000	70,950,000	425,700,000
129	51		10층이상	10	482,357,000	865,130,000	86,513,000	1,434,000,000	30,000,000	41,700,000	143,400,000	143,400,000	143,400,000	143,400,000	143,400,000	143,400,000	71,700,000	430,200,000
			1	1	415,083,000	744,470,000	74,447,000	1,234,000,000	30,000,000	31,700,000	123,400,000	123,400,000	123,400,000	123,400,000	123,400,000	123,400,000	61,700,000	370,200,000
			2	1	424,164,000	760,760,000	76,076,000	1,261,000,000	30,000,000	33,050,000	126,100,000	126,100,000	126,100,000	126,100,000	126,100,000	126,100,000	63,050,000	378,300,000
		113동 1호	4	1	442,995,000	794,550,000	79,455,000	1,317,000,000	30,000,000	35,850,000	131,700,000	131,700,000	131,700,000	131,700,000	131,700,000	131,700,000	65,850,000	395,100,000
			5-6	2	452,416,000	811,440,000	81,144,000	1,345,000,000	30,000,000	37,25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67,250,000	403,500,000
			7-9	2	461,497,000	827,730,000	82,773,000	1,372,000,000	30,000,000	38,600,000	137,200,000	137,200,000	137,200,000	137,200,000	137,200,000	137,200,000	68,600,000	411,600,000
			10층이상	1	466,213,000	836,170,000	83,617,000	1,386,000,000	30,000,000	39,300,000	138,600,000	138,600,000	138,600,000	138,600,000	138,600,000	138,600,000	69,300,000	415,800,000
183P	1	103동 1호	15층	1	886,330,000	1,589,700,000	158,970,000	2,635,000,000	60,000,000	71,750,000	263,500,000	263,500,000	263,500,000	263,500,000	263,500,000	263,500,000	131,750,000	790,500,000
197P	1	115동 1호	10층	1	951,257,000	1,706,130,000	170,613,000	2,828,000,000	60,000,000	81,400,000	282,800,000	282,800,000	282,800,000	282,800,000	282,800,000	282,800,000	141,400,000	848,400,000

■ 공통 유의 사항

-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69세대는 별도 분양 대상으로 상기 공급 대상에 미포함 되었으며, 추후 임대공급 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사업주체에서 '주택형별', '충별', '향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에 따른 인지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 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 대상으로서 상기 공급 대상 및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 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경계측량 결과 또는 공부 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지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체는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중도금 금융 대출을 희망하는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 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 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내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 불가), 또한 제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주 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나이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 접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신청을 받고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선정합니다.
- 외관 색채, 부대 시설 등의 기타 시설은 경관심의 재심의 등을 통해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공급계약서 가 우선함)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 경과하고,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에 가입하여 6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팀	납입인정금액이 예치 금액 이상인 뭐	른(전용면적 85m'이하 주택형에 한함)								
		[청약예금의 예치	금액]									
청약통장 자격요건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용면											
당첨자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 지역 거주자(제주특별자치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 	도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 지역 거	주자 (제주특별자치도 1년 미만 거주	ና ት)								
선정 방법	-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84A / 84B	40%	60%								
	전용면적 85m² 초과	108A / 108B / 129 / 183P / 197P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특	별표1의 2 나목)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35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주자저축		본인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가입 기간	17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718 712		배우자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 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 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 자격 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 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 소통방 > APT 당첨 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 증빙을

위하여 당첨자발	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 기원	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하였으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일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 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 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으면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으면 부양가족으로 봄 이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 방법: (1)주민등록표등조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 18세 이상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 서류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구민등록표조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6						
١		가입 기간				
١		주택소유여부 및	○ □ ᄌ태기가 저용 기즈 미 ⊙ ㅂ야기조이 이저 저용 기즈에 띠긔 ᄌ태ᄉᄋ업ᄅ 파저치기나 □ᄌ태기가의 사저치거나 겨오에느 「ᄌ태고그에			
١		무주택기간	①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١		산정기준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۱						
۱		■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 : 가입 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중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1순위 가점제 청	약 시 유의 사항			
١	비고	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또는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				
١		- 1순위 가점제 등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또는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V

청약 신청 및 당첨자발표 안내

■ 청약 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 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 신청 완료
- 청약 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 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지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 청약 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 내용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 신청 취소 완료
- 청약 신청 취소 가능 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 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 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 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 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 서류

	필요 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갖춰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 청약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제3자 대리 신청 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추가 서류	위임시는 제출 생략)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 장소 비치)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 자격 전산 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되었을 때만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 된 내용과 신청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이나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면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 청약 신청 단계	ᆒ에서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 신청 자격요건을			
마이데이디 ('청약도움e')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영국도움e) 서비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1 <u>11</u>	- 이용 방법 : 청	약 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	부터 일반공급 청약 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공고단지 청약	모집공고에 대	한 신청자와 그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 제한 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연습	- 세대원 등록 병	방법 : 청약 자격 확인 → 세대 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 구성원 동의			
	- 이용 방법 : 공	·고단지 청약 연습 → 공고단지 청약 연습 신청(단, 세대 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 자격 검증)			
		- 조회 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당첨조회			
		- 조회 기간 : 2024.09.20.(금) ~ 2024.09.29(일) (10일간)			
		- 조회 기간(10일)이 지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 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 소통방 → APT 당첨 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 내용 확인 가능			
	청약홈	- 현장 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 내용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당첨자발표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비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 내용 조회 불가(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 일시 : 2024.09.20.(금) 08:00 (제공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자	- 제공 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 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일정

구분	신청 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 순번 발표
0	1순위	■ 일시: 2024.09.20.(금) ■ 확인 방법
일반공급	2순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www.applyhome.co.kr</u>) 또는 스마트폰 청약홈앱에서 개별 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당첨자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 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 내용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 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 소유 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여부 전산 검색 소요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 실태 전산 검색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만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V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2024.09.22.(일)~09.26.(목) 10:00~16:00까지	위파크 제주 견본주택 (제주시 오라이동 1585-1) * 사전방문 예약제로 접수 예정

- 주택의 공급계약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 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가 다를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 료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 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사업주체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추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 사항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공통 서류 (예비입주자 _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포함)	0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기록 대조일 : 출생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 '상세'로 발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0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I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 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상세 발급)
		0	해외 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또는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또는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공급 신청자의 등본상 등재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공급 신청자의 등본상 등재된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직계 존·비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직계비 속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자		0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 피부양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 신청자가 단신 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0\ET 7\0\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0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청약홈) 청약홈 > 청약 자격 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0	당첨 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 소통방 > APT 당첨 사실 조회
제3자 대리인 신청시	0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청약자(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분), 대리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접수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0		인감도장	청약자(본인)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추가 사항	0		위임장	청약자(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구기 시청 -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당첨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통보를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받은 자		0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에 필요한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증 서류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빈칸으로 발급함으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 대상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 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 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 3.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경우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인정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면 6만 6에 이상의 직계존속에 의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기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 기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9. 주택공급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27 조제 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의 각호 및 제3조 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 나. 임차 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
- 다. 임차 주택 취득일(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 주택에 거주한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 3 및 별표1 제1호 가목2)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m' 이하로, 주택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6천만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 은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 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에 따름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예시)
 - ①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②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
 - ③ 분양주택(LH, 지방공사 등)으로써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거나 한 경우
 - ④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 ⑤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⑦「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정당당첨자가 정당계약을 하거나,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잔여 세대를 추가 계약한 경우
- ⑧「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많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한 주택유형(타입)을 계약한 경우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 사항

■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VΠ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4.10.01.(화) ~ 2024.10.04.(금)	견본주택		
(일반공급)	(4일간, 10:00 ~ 16:00)	제주시 오라이동 1585-1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 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 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 소유 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여부 전산 검색 소요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 실태 전산 검색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만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 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 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계약금은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서류	유형						
구분	_{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유의 사항			
	0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계약금은 견본주택에서 현금이나 수표 수납 불가함으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요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Ο		신분증	본인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 거주 사실 증명서 1부)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이기주머니 드니	본인	■ 용도: 주택공급 계약용			
	Ο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E UN 6M 2 4 UN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본인 계약 시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서명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			
		0	당첨유형별 입주 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	해당자	■ 자격 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서류는 제외			
		0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소명자료)	해당자	■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0		전자 정부수입인지	-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취급금융기관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및 출력
			■ 수입인지 구매금액: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발코니 확장 대금 + 추가 선택품목 대금)에 해당하는 인지세 금액의 절반
			※ 계약서 기재 금액 기준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으로 75,000원
			※ 계약서 기재 금액 기준 10억원 초과 : 350,000원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으로 175,000원
			※ 사업주체 부담의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를 별도로 발행하여 계약서에 첨부 예정
0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0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거래가격 6억원 이상 계약 시 신고 의무

※ 본인 이외에는 모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포함) 대리 계약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인감증명서(위임용)	계약자	※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 대리 계약은 불가
대리 계약시		인감도장	계약자	■ 계약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
추가	0	Lax0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구비서류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 거주 사실 증명서 1부)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위임장	대리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 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분양 대금 납부 계좌	제주은행	707-100-101951	신영부동산신탁(주)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다르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 체결로 처리됩니다.

[※] 지정된 분양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를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 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 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 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 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②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 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청약 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다를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면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변경될 때는 변경 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 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 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균등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1) 구입처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u>https://www.e-revenuestamp.or.kr)</u>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2) 구매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 3)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4)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5)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q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될 때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 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 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기준)

■ 계약자 대출 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 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 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공급대금의 65%) 중 공급대금의 60% 안의 범위(중도금 1회부터 중도금 6회까지)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 알선을 할 예정이며, 중도금 7회차(공급 대금의 5%)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날짜 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 무 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다르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

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는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잔금 납부시 사업주체가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기간 내 미납 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며,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따라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고려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 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세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 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 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 대금 납부 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 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 대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았으면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 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 및 대출 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입주 예정 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 가능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60일 이상의 입주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지면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 암반 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체력단련시설 2개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관리사무소, 경비실, MDF실, 방재실, 기계/전기실, 근린생활시설, 용역원휴게실, 주민공유시설, 어린이도서관, 맘스스테이션, 기타 휴게공간 등이 있습니다.

■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공급 질서 교란자(알선자도 포함) 및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학교 배치 등 관련분야 유의 사항

- 공동주택(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초등학생은 인근 신설초등학교(가칭"오등봉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이며, 입학시기 및 통학구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나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학생배치에 관한 사항은 개발사업시행자와 제주 교육청간 체결한 협약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며 제주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중학생은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에 전산 배정되어 배치될 예정이며, 입학 시기의 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문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고등학생은 거주지에 제한 없이 도내 전지역 입학이 가능함. 입학 시기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입전형요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시설 등은 향후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통학구역 및 학교군 내 공동주택 개발계획의 변경(공급면적, 세대수, 입주 시기, 분양 방법 등) 및 새로운 개발계획 승인·시행 등 학생 배치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생 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학생 수, 교육부의 급당 학생 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인지하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VШ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
T극8	글고니 욕망 증사 금액	계약시	2025-04-22	입주지정일
84A, 84B	19,000,000	1,900,000	3,800,000	13,300,000
108A, 108B	22,000,000	2,200,000	4,400,000	15,400,000
129	25,000,000	2,500,000	5,000,000	17,500,000
183P	54,000,000	5,400,000	10,800,000	37,800,000
197P	57,000,000	5,700,000	11,400,000	39,900,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납부 계좌	하나은행	145-910028-19804	주식회사 호반건설	

- 최초 발코니 확장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추가 선택품목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발코니 확장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알릴 예정입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됨)
- 발코니 확장 공사의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4.10.01.(화)~2024.10.04.(금)]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 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일부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하단 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3)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 사항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일부)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기존 시공품목의 미설치로 인해 감소되는 공사비용과 추가 시공품목의 공사비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다용도실 및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제외)로 산정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공사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제공품목의 차이가 있으며 상이한 내부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 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미 선택시 추가선택품목(옵션)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 측벽 / 세대간벽의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환기 부주위로 인한 결로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세대분전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발코니 확장옵션 미적용 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시행위탁자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와 무관 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미확장 계약자는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 등 관련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 배관공사 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서 개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관련 법령상 발코니가 하향식 피난구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 전시관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드레스룸에 설치되는 제습기의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선택품목의 종류: 벽지, 바닥재, 주방가구, 조명기구 등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 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안내(발코니 비확장 시 일부 품목 선택 불가)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7 8	선택안	설치 개소	M +1 OI +1	세대당	설치금액	비고
구 분	선택한 물자 개포		설 치 위 치	일반형	고급형	미ᅶ
	1안	3	거실+주방+침실1		7,200,000	
	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8,000,000	9,200,000	
84A, 84B	3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8,000,000	9,200,000	
	4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9,500,000	11,000,000	
	5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10,800,000	12,500,000	- 84A 주방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선택불가
	1안	3	거실+주방+침실1	6,450,000	7,350,000	
100	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8,200,000	9,400,000	
108A, 108B,	3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8,200,000	9,400,000	
129	4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9,750,000	11,250,000	
	5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11,100,000	12,800,000	- 108A, 108B 주방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선택 불가

(2) 천장형 공기 청정기 (시스클라인)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선택안	설치 개소	설 치 위 치	세대당 설치금액	비고
	1안	2	거실+침실1	2,200,000	
	2안 2	침실2+침실3	2,100,000		
84A, 84B, 108A, 108B 129	3안	3	거실+침실1+침실2	3,250,000	
123	4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300,000	
	5안	5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5,350,000	- 84A, 108A, 108B 주방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선택 불가

(3) 추가 선택품목 - 마감재 및 가구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적용 사항	84A	84B	108A	108B	129	비고
	아트월	세라믹 타일	3,200,000	3,200,000	3,300,000	3,300,000	3,500,000	- 미선택 시 기본 타일 설치 (600 X 1,200)
거실		거실 우물 천장 4면 리니어 조명+디밍 시스템	2,800,000	2,800,000	3,200,000	3,200,000	3,500,000	- 미선택 시 기본 직부등 설치
	조명	거실 우물 천장 4면 리니어 조명+디밍 시스템 +침실-2 소형 다운라이트 (4EA)	3,300,000	3,3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거실 확장형(거실+침실2) 선택시, 선택 가능 - 미선택 시 기본 직부등 설치
복도	아트월	세라믹 타일+ 간접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6,000,000	- 미선택 시 벽지 마감
		'='자 주방+슬라이딩 도어+시스템 선반+키큰장 +우물천장	2,3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7 U	주방 평면	'ㄷ'자 주방+장식장+대형 팬트리	해당없음	해당없음	7,00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옵션 선택 시 알파룸을 확장하여 대형 주방으로 구성됨
주방	특화	대면형 주방+수납장+장식장+AL 여닫이 도어 +대형 팬트리+전기쿡탑+독립형 후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7,200,000	해당없음	
		'그'자형 주방+장식장+독립형 후드+복도 팬트리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200,000	

	11 = 14	세라믹 타일 (기본형 주방)	4,000,000	4,600,000	3,500,000	4,600,000	3,000,000	
	상판, 벽	세라믹 타일 (옵션형 주방)	4,500,000	해당없음	4,300,000	3,000,000	4,700,000	- 주방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
		우물 천장 2면 리니어 조명+디밍 시스템 (기본형 주방)	해당없음	해당없음	1,800,000	1,600,000	1,900,000	- 옵션 선택 시 별도 스위치 설치
	조명	우물 천장 2면 리니어 조명+디밍 시스템 (옵션형 주방)	1,600,000	Можа	1,800,000	2,000,000	1,900,000	- 답한 한국 사 글도 그귀사 글사
		식탁 펜던트	해당없음	해당없음	450,000	450,000	1,000,000	- 주방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
알파룸	도어, 조명	4짝 슬라이딩 도어+소형 다운라이트 (4EA)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800,000	
욕실, 주방	수전 및 악세서리	무광니켈 색상 적용 욕실/주방수전(외산)+악세서리/샤워부스(국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8,400,000	- 욕실-2(부부), 욕실-3(공용) 해당
발코니		다용도실 수납장	1,800,000	1,800,000	3,000,000	3,000,000	3,600,000	- 84 / 108 : 발코니-2 해당 - 129 : 발코니-3 해당

(4) 추가 선택품목 - 가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_	구 분	적용 사항	84A	84B	108A	108B	129	비고
주방	전기쿡탑	LG전자 BEI3GQBI	1,150,000	1,150,000	1,150,000	1,150,000	1,150,000	- 108B타입 주방 특화 옵션 선택 시 선택 불가 - 옵션 선택시, 3구 가스쿡탑 미설치
	전기오븐	LG전자 MZ941CLCAT (고급형)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 옵션 선택시, 일반형 오븐 미제공
7 0		LG전자 DUE5BG (베이지)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 M/H 84A, 108A타입 설치형 - 미선택 시 하부장 제공
	식기세척기	LG전자 DUE6GL (솔리드그린)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 M/H 129타입 설치형 - 미선택 시 하부장 제공
욕실-1	일체형 비데	대림비앤코 DST-670BR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 옵션 선택 시 투피스 양변기 미제공 - 129타입 욕실-3 별도 선택 가능
욕실-2	일체형 비데	대림비앤코 DST-670BR	290,000	290,000	290,000	290,000	290,000	- 옵션 선택 시 투피스 양변기+비데 미제공

(5) 추가 선택품목 납부 일정(금액) 및 납부 계좌

■ 납부 일정(금액)

구분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
	계약시	2025-05-22	입주지정일
추가 선택품목 납부 일정 및 금액	10%	20%	70%

※ 최초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추가 선택품목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납부 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	하나은행	145-910028-19804	주식회사 호반건설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공사 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알릴 예정입니다. (개별 가상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됨)
-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4.10.01.(화)~2024.10.04.(금)]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 선택품목 중도금부터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 선택품목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납부 기일 및 납부 금액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유의 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해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위파크 제주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 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세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철근콘크리트 공사 착수 시점 등)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 에어컨은 상기 선택 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 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 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액자형은 설치 불가))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해당 실의 냉매 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 냉매 배관 미시공 등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주택형별 형태에 따라 실외기실, 발코니에 시스템 에어컨 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 세대 비확장 시 천장 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실내기 최대 조합비는 115% 이내로 설치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 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 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장비의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주방 미설치 시, 냉방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 84A 주택형의 경우 주방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시스템 에어컨 옵션 5안 선택이 불가합니다.
- 108A.B 주택형 의 경우 주방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시스템에어컨 옵션 5안 선택이 불가합니다.
- "전기쿡탑"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에도 주방 상부장 가스 배관(노즐)은 제거되지 않으며, 배관 말단 및 타공 부위는 캡 마감 처리할 예정입니다. 추후 가스쿡탑 설치 및 가스배관 연결은 입주자 공사분임.
- 다용도실 수납장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세탁수전 및 배선기구류 위치 및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 수납장 유상 옵션 선택시, 가전기기 사양에 따라 가전 기기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독립형 후드 옵션 선택 시 자동식소화기는 독립형 후드 내부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하고 견본주택 등에서 별도로 계약 체결한 추가 선택품목(안전 방법 방충망 등) 선택 시 기본으로 시공되는 품목은 설치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추가 선택품목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 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 시 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질,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ΙX

단지여건 및 유의 사항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내 사항 및 유의 사항

구 분	내 용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입주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자재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위치 및 추가적인 운영 기간 등은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기로 함.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공통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중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주체는 공원 및 비공원시설(공동주택)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을 시행하며, 공동주택 부지 외 조성사업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를 포함한 공원 및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계획 등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국가시책, 현장여건, 민원 등에 따라 분양 홍보자료에 안내된 내용 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준공은 입주예정시점과 다를 수 있음.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개발계획 및	• 당 사업과 공원조성사업외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 혹은 개발사업의 사
단지 외부	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기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이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 유가 없음.

- 본 단지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해당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북측에 문화시설(한라도서관, 제주 아트센터, 음악당, 주차장 등), 단지 남측에 다목적 운동장 등이, 단지 동측에 야외공연장이 위치하여 소음, 일조,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 단지 남동측에 보행자도로가 위치하여 소음,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체결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및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 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반시설의 미완료로 인한 당 사업지의 정식 사용승인이 아닌 동별준공, 또는 임시사용 등이 불가피할 경우 입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 및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 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 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단지 내 우·오수처리계획,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공원부지 우·오수처리계획은 변경 시공 될 수 있음, 필요 시 비공원시설 부지 내를 통과하여 외부로 연결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의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 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 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단지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인접대지, 도로, 공원, 녹지, 기타시설 등은 현재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관계기관 및 해당관청의 계획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단지주변 인접대지, 보행자도로, 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산책로, 야외공연장, 다목적 운동장 등이 계획됨에 따라 전면조망 및 생활권의 일부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서측 도로 및 북측에 문화시설(한라도서관, 제주 아트센터, 음악당, 주차장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서측 오남로, 남측 아연로로 인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주변 도로(서측 : 폭 25m)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도로에 인접한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여건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해야 함.
- 주춬입구를 제외한 보행춬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본 단지와 인접한 공원시설 계획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 내/외 레벨차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및 계단, 산석 등의 설치 위치, 높이, 벽체두께, 형 상,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원 연결통로 및 산책로는 당 사업 단지계획과 연결되어 있으며,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사용검사 시 소음을 재측정하여 법적 기준을 초과할 시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천장고는 거실/침실기준 2,300mm로 설계되었으며 우물천장 설치 및 확장/옵션 평면선택 등의 사유로 본 공사 시 천장고 및 실별 바닥단차는 변경될 수 있음.
- 고객의 개별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으므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의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단, 비확장형 선택 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특정세대를 목업세대로 지정하여 샘플시공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 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해당 세대 수분양자는 입주 전·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 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예방 해야함. (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각 세대별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아일랜드 하부장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 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 됨.
 - 드레스룸 벽판넬형 선반 설치시 도배 및 걸레받이 미시공 됨.
 - 붙박이장 가구후면은 별도 마감재 시공되지 않음.
 - 기타 마감은 견본주택 등을 기준으로 함.
- 세대 내 문 및 창의 위치, 재질, 색상,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은 시공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화장실 등 타일이 시공되는 부위의 타일 줄눈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유리, 창틀)의 사양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내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주방발코니에는 소방배관, 가스배관, 에어컨배관(옵션 선택 시)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는 배수를 위한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우배수 이중관 등) 및 바닥 드레인은 천장 또는 벽에 노출 설치되며 소음 발생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실시공 시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 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함.
-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형별 형태에 따라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시스템에어컨 배관이 노출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동파 등의 우려로 인하여 배수구가 미설치되며,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한 응축수 및 우천시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한 관리(청소 등)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함.
- 세대 내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므로 화재 등 비상 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피난구 개방에 따른 인접세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해야 함. 또한, 천장에는 상부 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바닥에서 돌출되어 설치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 설물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1층 및 필로티 상부층, PIT 상부층 세대의 경우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에 상부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됨.
- 하부층이 필로티 또는 PIT층 일 경우 상부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아닌 완강기가 설치되어 비상시 피난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견본주택에 보여지는 위치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 내 피난구의 위치는 실 시공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 설치 공간 상부에 전열교환기가 하향식 피난구 위치에 따라 충별 교차 설치될 예정임.
-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 사용 시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인터넷 미사용 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기술 개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전제품에 따라 연동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세대 내 무선 AP는 거실 1개소에만 설치되며 세대 구조 및 거리에 따라 무선 성능 저하 및 무선 접속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동체감지기 설치는 1층, 2층, 최상층에 한하여 설치됨. (필로티 상부 세대는 필로티 상부 1개 층)
- 주방 씽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됨.
- 주방 하부장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는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됨.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될 수 있음.
- 욕실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탁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임.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와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커버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내부순환모드(공기청정모드)가 지원되지 않음.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 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129주택형 계약세대가 주방 확장 옵션형을 선택 할 경우 팬트리 바닥면적 일부가 Dead Space로 시공 됨.
- 101, 102동(1호라인), 103, 104동(3호라인), 105, 106, 107, 108동(3호라인), 109, 110동(3호라인), 111, 112동(2호라인), 113동(3호라인), 114, 115동(2호라인)의 침실1 및 드레스룸이나 욕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일부 인접해 있어 엘리베이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1층 필로티 인근 및 주출입구 근처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 방법 특별 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통신 단자함 설치 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처리 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므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183P, 197P의 욕실배관은 배관 방식은 충상배관으로 적용됨.
-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에 의해, 외부유리에 패턴, 불투명도, 색깔등을 활용하여 예방 적용 예정임.

학교관련

- 본 사업지의 학교설립 및 학생배치는 관할교육청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당사의 사업계획 및 방침과는 무관함.
- 본 주택의 입주로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인근 신설초등학교(가칭"오등봉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이며, 중학생은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에 전산 배정되어 배치될 예정이 나 추후 관할교육청의 학교배치관련계획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84A, 108A, 129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세대 환기 장치 제품 사양 및 위치, 욕실환풍기 제품 사양 및 위치, 환기디퓨져의 형태와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 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난간포함),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감지기, 스피커 등)은 견본주택용이며, 실 시공시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 예정임.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분양홍보물	또 전문부탁 및 현경을 경문에서에 막답 확진에서가 마다며, 부부 이에 따는 이의을 제기될 수 따듬.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 납부자 포납증과 어떤 제국·메로된 역동 동포물은 자연 동모자 모리자 모든 계곡자의 이에를 납기 위한 것으로 현재되 리고 중이하기다 중부 현장 및 위포되는 중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할게 자랑의 자에게 ᆻ할 수 ᆻ으므로 인근무역 중단 중할 중에서 인크게 자립주지 및 부인된중, 개발계획할 확인에요 중의 및 계약할 에게게 다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 * 문장 단단 담물것, 단체물에 답답된 모음고, 단시대시고, 어디지것 중 국장 동모물(문장 기물로고 중) 및 단근무국에 물지된 고장고(무단단당 및 기단지물은 아디지모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에 되지, 기 때문에 글제되 다들 수 있고 수우 한성을 수 있으며 이에를 잡기 뒤에 글자함(8의 한지대 기뉴다다시글의 대수수요 꽃 자글놀에 대한 한테디어 계속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대지지분의 증감은 제외)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
	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계약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11 -1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
	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는 수분양자와 사업주체가 각 1/2씩 균등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함.
	• 공용조명(경관조명 등), 조형물, 단지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건물, 외부 놀이터 및 운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시설물 및 이용자, 차량에 의한 각종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현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인접 동, 인접세대 및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본 단지 임대세대는 84A 17세대, 84B 16세대, 108A 22세대, 108B 8세대, 129타입 5세대, 183P 1세대로 구성하여 각 동에 임의 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
M 211 E1	기할 수 없음.
설계 및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단지내부여 건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건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레벨차, 도로 및 보도 선형, 폭, 시설물의 위치, 규모, 내부구조, 공용부분(동 현관,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홀 등) 및 부대복리시설의 인테리어, 외
	부색채, 마감재계획 등은 실제 시공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및 세부 구획이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는 단지주민이용과 통행 등에 따른 빛(야간조명 효과 등), 소음, 진동 및 시각적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펜스 등 시설물이 별도로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각적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안전 관리 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 출입구, 놀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및 아파트 주 현관 출입구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 시공 시 수량이나 위치 등이 일부 변 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차량 진출입구 및 주차램프 등은 지구단위지침 및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의견 및 제반법규 등을 반영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 차량통행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출입구 : 단지 서측 110동, 111동 사이에 설치됨,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장 설치됨. (109동, 110동 사이 / 111동 하부를 통과하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출입 구 설치, 공동주택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진출입로를 공유함)
-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서측 1개소 설치되어 단지 주출입구를 겸용하여 이용함.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서측 주출입구를 통해 진입하여 111동 하부 인근 지하1층에 주차구획 8(대 설치됨(장애인 주차구획 포함).
- 104, 108동 하부 지하1층에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됨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내부 및 단지경계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비상차로 포함)의 경사도는 시공시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기준을 준수하여 101~115동으로 부여되었으며, 공급시의 명칭과 향후 입주시의 명칭이 상이할 수 있음.
- 각동 저층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 비상차로 선형 및 경사도는 주변현황,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지하를 연결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엘리베이터 총 2대, 계단실 4개소)이 설치되어 있음.
- 단지내 단차 구간 지상~지상을 연결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및 외부 계단 (외부엘리베이터 총2대, 외부계단 2개소)이 설치되어 있음
- 단지 내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옥외계단과 인접한 세대에는 시각적 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옹벽+벽면녹화,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모형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변경 등 추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기 바람.
- 단지 주출입구에서 주동 출입구까지 장애인 접근 가능한 도로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레벨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구간은 제한될 수 있으며 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각동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경사로 설치,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비상자동차 동선 및 주차구획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 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101, 106동 인근에 저수조 및 펌프실, 103, 104동 인근에 지하저류조, 105동 인근에 우수조 및 펌프실, 107동 인근 중수처리시설, 108동 인근 펌프실(부대복리), 108, 109동 인근 전기실 및 발전기실과 소화주조실, 113, 114동 인근에 저수조 및 펌프실 등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에 D/A가 노출되어 매연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2동 인근, 107~109동 지하주차장 램프 인근, 112동 인근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야 함. (해당 오수처리 시설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소음, 진동에 의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하부 지하층에 제연팬룸 및 동전기실이 계획되어 있고 1층필로티 하부 및 주동에 인접하여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매연(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상부 및 인접세대는 통행 동선에 의한 소음 및 시각적 간섭,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면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고 채광 창의 위치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비상용 포함), 계단실 및 샤프트 등으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각 동 엘리베이터는(비상용 포함) 기계실이 설치되지 않고 벽체부착타입으로 설치되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주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주변 환경(일광 발전효율, 음영 간섭 여부 등)에 따라 설치 위치, 용량 등 모델하우스 설치 단지 모형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 105동 ~ 111동 , 114동 옥상 일부구간에 세대 내 일조량 확보를 위하여 태양광 반사판이 설치 될 예정으로 실시공 시 사양, 위치, 수량, 크기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주동옥상 및 옥탑층에 설치되는 구조물(태양광 집광판 포함)에 의해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인접 고층세대는 태양광 반사판 등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이 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동지기준 일조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다수 있으며 불만족 하더라도 추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세대의 실은 거실창만 적용됨.
- 태양광 반사판의 경우 유지 보수기간 10년으로 향후 입주자협의체로 인계 예정이며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함.
- 본 공동주택 단지내 동별, 세대별 일조 수인량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세대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총 일조시간의 합이 4시간 이상이거나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일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있음.
- 공동주택 부지 내 발생하는 우수 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103동, 104동 인근 지하에 저류조가 설치 될 예정임
- 103동, 104동 인근 지하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해당 저류조 시설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소음, 진동에 의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저류조는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홍수저감을 위하여 활용 및 관리 되어야 하며 입주자 협의체에서는 주기적인 관리 및 필요 시 행정기관 관리상태 점검 등의 경 우 협조해야 함.
- 주동 옥상,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임.
- 주동 저층부 마감은 석재마감(필로티 내부 제외) 및 도장마감 적용 예정이며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입면, 마감재,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상위 지침변경,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단위세대/공용부의 창호 및 난간의 제작사, 사양, 위치,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옥외시설물 및 사인물 등은 인허가 과정 및 당사 기준 변경, 본공사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저층부 석재시공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동현관 및 필로티출입구,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당사 특화계획과 디자인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항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각 동 외벽, 옥상, 옥상 구조물, 옥탑 등의 구조물의 디자인, 형태, 줄눈, 색채, 입면 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일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음.
- 103동, 105동, 115동 팬트하우스의 경우 옥상 개방으로 인한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구조물 지붕위로 올라갈 경우 낙하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람.
- 103동, 105동, 115동 팬트하우스 세대 내 오배수 배관은 층상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유지보수 방식이 층하배관방식과 상이하며, 상황에 따라 배수 시간이 늦어질 수 있음.
- 103동, 105동, 115동 팬트하우스 외부 테라스의 경우 장마철 폭우로 우수관이 막힐 우려가 있어, 세대내 침수예방을 위해 발코니 턱 부위에 물빠짐 구멍이 계획할 예 정임.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하 2개층 및 부분 3개층(104~111동)으로 계획되어 있음.
-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주차장은 지하 1~3층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 1층에 위치함.
- 본 단지의 주택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단지내 107, 108, 109, 110동 사이(지하주차장 램프 진입), 111동 하부(데크하부 진입) 각 1개소씩 총 2개소 위 치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출입구는 111동 하부를 통하여 지하1층에 위치, 공동주택 출입구를 공유하며 인근 저층 세대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은 101동~111동 / 112~115동 각각 이용할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 1층 주차장(101~103동, 113~115동), 지하 1, 2층 주차장(104~111동)의 차로 높이는 2.7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주차장 지하3층(104~111동), 지하2층(101~103동, 113~115동) 차로 높이 2.3m 계획되어 있음.
- 단지 중앙 진출입구 2개소(램프진입/데크진입) 높이는 2.7m 확보되어 있으며, 마감 등에 의하여 세부치수 변경될 수 있음.
- 주차램프 진입부분 및 통로의 유효높이는 지하1층 2.7m, 지하2층 2.7m(104~111동), 지하2층 2.3m(101~103동, 113~115동), 지하3층 2.3m(104~111동)이며, 주차구획 면의 유효높이는 2.1m로 설계되었으나 시공 시 각종 배관설치 등으로 일부구간 유효높이가 변경 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평면 구성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 시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형태로 진입동선이 형성되어 있음. 또한 지하여건에 따라 각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단지북측 지하1층~지하3층 공동주택 주차장 : 101~111동 이용 가능 / 단지 남측 지하1층~지하2층 공동주택 주차장 : 112~115동 이용 가능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LG U+와 제휴하여 충전 환경을 구축, 운영(5년 약정, 5년 무상 A/S)하며, 성능개선 및 기술개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과 지하층 E/V홀 및 계단실은 대기환경 (온도차 등)의 영향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는 단지주민이용과 통행 등에 따른 빛(야간조명 효과 등), 소음, 진동 및 시각적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펜스 등 시설물이 별도로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각적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지하1층에 설치되며, 104, 105, 108동 인근 선큰(계단, 엘리베이터) 출입이 가능함.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됨. 또한 실 시공 시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및 세부 구획이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108동 전면 전기실 실외기 및 110동 측벽 맘스테이션 실외기가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미관저해, 시각적 간섭 및 소음, 진동, 수증기 등이 발생될 수 있고 실 시공 시 위치나 형태,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서측 주출입구 인근 1개동(지하1~지상1층 계획) 설치됨.
-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및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은 별도 실외기실(공간)을 구획하여 설치됨에 따라 통행 시 미관 저해, 시각적 간섭 및 소음, 진동, 수증기 환경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치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시공 시 위치, 형태,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은 별도 실외기실 구획하여 설치됨(근린생활시설 지붕)에 따라 통행 간섭 및 소음, 진동, 환경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치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시공시 위치, 형태,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채광창, D/A)과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시설, 주동 소방관련 급기용 D/A 등이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시설물이 인접하는 일부 동 및 세대는 매연, 악취, 해충발생, 급배기 소음, 조망 등이 저해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시설물의 위치, 수량, 크기, 높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조경 및 시설물의 경우, 당사 디자인특화계획 및 시공여건, 인허가 등에 따라 디자인, 형태, 크기, 색채,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 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무인택배 보관함은 동 코어별 지하층 주동 출입구 인근에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설치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와 동선이 상이할 수 있고 설치 위치 및 개소, 수량은 추후 공사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각 동 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 시공 시 설치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배치 여건에 따라 각 동별 인접 한 자전거 보관소 개소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진능력을 공개합니다. (단, 추가지반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 지반종류 및 내진설계범주, 반응수정계수는 변경될 수 있음.)

유효 지반가속도(S)	지반 종류	중요도 계수(l _E)	내진설계범주	내진등급	반응수정계수(R)
0.14	S3	1.2	С	I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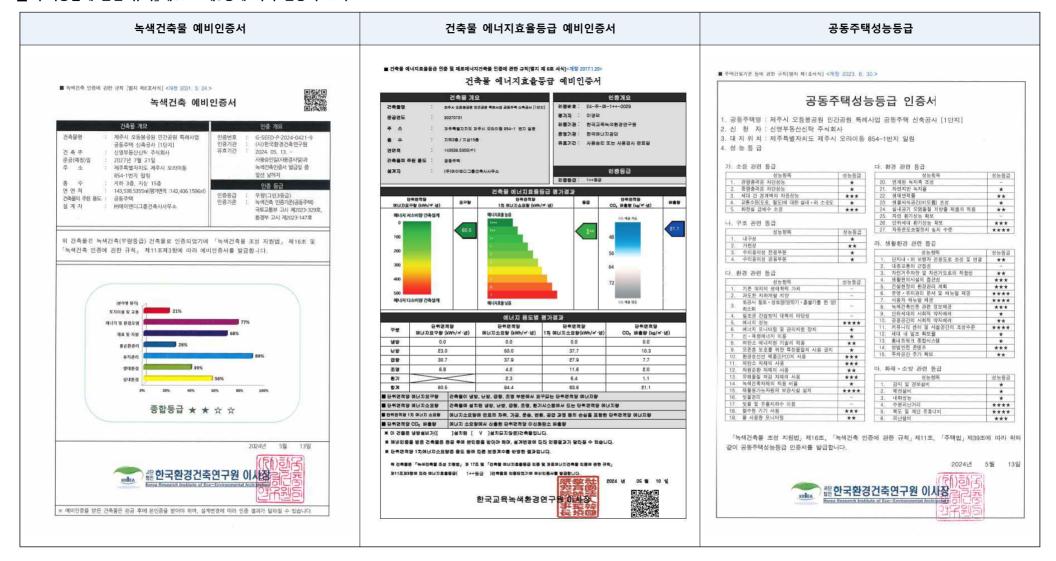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내진능력은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MMI) VII-0.181g 임.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이 단지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인접 설치 및 보일 수 있음.
- 한전 PAD, 통신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 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통신실(TPS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등은 기간 사업자 제공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경관조명 및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105동 지붕에 TV 공청 안테나(전파 방향 기준)와 지상 일부 구간에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되며 이동통신 기간 사업자 안테나(105동, 107동, 109동, 113동 지붕층) 및 중계설비(지하주차장 팬룸)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파 상태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소방법 및 방송 통신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 방송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할 수 있음.
- 단지 내 특고압 전력 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 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도시가스·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우측부위(112동 3호세대 배면)에 도시가스 지역정압기가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내 지역 정압기는 근린생활시설 측면, 112동 3호세대 배면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시설물의 위치, 크기, 높이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난방 및 급탕이 공급될 예정임.
- 단지 내 레벨은 총 3단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단을 연결해주는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계단실, 옥외계단 등 계획되어 있음.
- 공원부지와 연계되는 진입로는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 진행 중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레벨차에 따라 조경석, 옹벽, 산석, 옹벽(보강토 옹벽 등) 및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담장 등으로 시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중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어린이집, 유아 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저층세대 시야 간섭 및 소음 등에 영향이 발생됨.

- 105, 106, 107, 108동 사이 지상 1층에 어린이집, 경로당 설치, 104, 108동 인근 지하 1층 커뮤니티센터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5동 지하1층에 주민공유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8동 하부에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타격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4, 108동 인근 커뮤니티시설 내에는 계단 및 장애인겸용 승강기가 1개소 설치 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생길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외부 창호 위치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세부 조정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옥외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등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어린이집, 경로당 : 105, 106, 107, 108동 사이 지상 1층에 설치, 다함께 돌봄센터 :104, 108동 인근 지하 1층 커뮤니티센터에 설치
- 주민운동시설-1 : 103, 104동 사이에 설치 / 주민운동시설-2 : 113,114동 사이에 설치
- 주민공동시설 : 104,108동 하부 지하 1층에 설치
- 근린생활시설 : 111,112동 사이 지하1층~지상1층에 설치
- 유아놀이터 : 115.108동 인근(어린이집 전면)에 설치 / 어린이놀이터-1 : 102.103.104.105동 사이에 설치 / 어린이놀이터-2 : 112.113.114.115동 사이에 설치
- 107동 1~2호라인, 108동 3~4호라인, 109동 3호라인의 경우 지하주차장 램프로 인하여 세대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110동 1~2호라인의 경우 단지 주출입구 문주 및 경비실로 인하여 세대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외벽이 노출되는 구간, 주동 PIT층에 일부 벽체가 OPEN 되거나 그릴창 설치되어 외기(빗물, 바람, 눈 등)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단차구간에는 투시형 난간 및 생울타리 담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8A와 129타입의 돌출발코니의 유리난간대는 본 시공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108A타입 발코니-3, 129타입 발코니-1,2 의 폴딩 도어는 발코니 확장시 제공되며, 본 공사시 색상, 재질 사양, 디테일 및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 세대는 일조 확보 여부를 감안하여 층별, 동별 분양가를 차등 적용하였음.

x | 7

기타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설계기준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제7조제2항제1호)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기계부문	고효율 가정보일러(다목)	적용	고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적용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M12M28M22)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전기부문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설계기준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제7조제2항제3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일금 사천사백오억삼백칠십만원정 (₩ 440,503,700,000)	제 01222024-101-0001500 호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당사가 본 아파트 "위파크 제주"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 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 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 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와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신영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 주식회사 호 반건설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해야합니다.
- 1.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시행수탁자인 신영부동산신탁(주)는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본 사업관 련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 2.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수탁자(사업주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3. 분양계약자에게 본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제반 권리의무 (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는 수탁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4. 수탁자는 분양계약과 관련한 매도인(공급자)으로서의 제반 의무(공급금액 반환, 지체상금 배상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를 현존하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초과 하는 부분은 책임범위에 따라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 5.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전과 후를 불문하고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 전 발생하자 포함)은 위탁자인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와 시공자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이 부담합니다.
- 6. 분양대금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7. 수탁자와 무관한 분양계약자의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한도초과 등) 또는 대출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계약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수탁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며 분양계약자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8.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사업시행과 관련한 필수적인 계약에 관한 승계계약체결, 자금관리 등 법률상 사업시행자로서 해야하는 형식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분양계약자 들과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가 임의로 분양계약자와 체결한 각종 합의서, 약정서 등은 수

탁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신영부동산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190099

• 사업방식 : 관리형 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권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시 개별등기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원/VAT포함)

구 분	건축	전기	소방
회사명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신우전기엔지니어링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VAT포함)	4,688,937,000원	635,278,900원	766,500,000원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수탁	시행위탁	시공사
상 호	신영부동산신탁(주)	오등봉아트파크(주)	㈜호반건설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3길 1-14, 2층(도남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우면동, 호반파크2관)
법인등록번호	110111-7126835	220111-0213884	204711-0007384

■ 사업지, 견본주택, 분양문의 안내

약도	و	안내			
1단지 : 제주시 오라이동 854-1번지 일원 2단지 : 제주시 오라이동 923번지 일원 견본주택 : 제주시 오라이동 1585-1번	지 분양문의:	분양문의: 1670-3767			
1 단 지 제주시 오라이동 854-1번지 일원 2 단 지 제주시 오라이동 923번지 일원 견본주택 제주시 오라이동 1585-1	■ 운영기간: 분양종료시까지	※ 정부방침에 의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운영기간: 분양종료시까지※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번호를 통하			
	홈페이지 주소	QR코드			
• KBS제주방송국 SK엔크린• 현장(2단지) • 제주아트센터 현장(1단지)	http://www.wepark-jeju.co.kr/	이 보고 제주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파크 제주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